

Registered No. 2008 - 538

## NOTARIAL CERTIFICATE



**SUNMYUNG LAW FIRM**

157-27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

The article 9.9 of page 2 of POSCO investment decision benchmark is translated to English.

The investment decision shall be determined over IRR 10%. Various factors such as corporate strategy, risk assessment analysis and qualitative effect should be considered for this decision

Translator : Jung-Heon, Oh (POSCO)

Signature :



# 투자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기 투자계획의 수립과 투자사업의 검토, 승인, 실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투자유형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투자유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성 투자라 함은 다음과 같은 사내 철강부문 설비투자를 말한다.
  - 가. 공장단위 설비의 신/증설 투자
  - 나. 동일공장 내 다수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의 기능복원 또는 성능개선 투자
2. 정비성 투자라 함은 제철소 생산관련 단위장치 또는 단위시설의 유지보완을 위한 설비투자를 말한다.
3. 경상투자라 함은 생산설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상적인 사내 투자를 말한다.
4. 투자자산투자라 함은 국내외 신규 사외투자와 기존의 출자회사에 대한 증자 등의 투자를 말한다.

### 제3조(업무분담)

- ① 경영기획실은 투자관리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가 된다.
- ② 투자의 계획, 실행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성 및 정비성 투자
    - 가. 100억원 초과 사업: 선강/압연설비투자계획실
    - 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 투자사업의 성격 및 업무효율성을 고려하여 선강/압연설비투자계획실과 설비기술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 다. 50억원 이하 사업: 설비기술부
  2. 경상투자
    - 가. 본사 경상투자: 제안부서
    - 나. 제철소 경상투자: 설비기술부
    - 다. 전산 및 통신 투자: 정보시스템실
  3. 투자자산투자: 제안부서
  4. 별도 사업추진 조직이 있는 경우 : 전담부서

## 제2장 중기 투자계획 수립

제4조(기간 및 대상사업) 중기 투자계획의 계획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의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수립한다.

### 제5조(수립절차)

- ① 총괄부서는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토대로 투자지침을 정하여 투자시스템에 등록한다.
- ② 제안부서는 투자지침에 따라 수시로 개별 투자사업기본안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사업등록을 의뢰하고, 주관부서는 제안부서에서 의뢰한 투자사업기본안을 확인하고 투자시스템에 등록 한다.

원본대조필





- ③ 주관부서는 해당부문의 투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본사 경상투자는 재무실, 투자자산투자는 경영기획실, 환경부문은 환경에너지실이 부여한다.
- ④ 총괄부서는 연도별 투자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기 투자계획을 확정하여 시스템에 등록한다.

제6조(투자예산과의 관계) 매 분기 투자부문 실행예산은 중기투자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다.

### 제3장 투자사업의 추진절차 및 성과관리

제7조(사업추진절차) 개별사업의 추진절차는 사업제안, 사업 타당성 검토, 투자심의, 사업승인, 계약, 시공(또는 설치), 성과평가 순을 원칙으로 하며, 투자사업의 구분, 투자금액에 따라 심의, 승인 및 평가절차를 달리한다.

제8조(사업제안) 사업제안은 제5조 2항에 따른다.

제9조(사업타당성 검토) 해당사업의 주관부서는 등록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동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1. 투자의 필요성
2. 타 사업, 중기 계획과의 관련성
3. 투자시기
4. 투자 규모 및 범위의 적합성
5. 투자 설비 및 Layout의 적정성
6. 기술적타당성: 기술개발실 참여 하에 기술 및 제품 개발 전략과의 연계성, 신기술 적용, 특히 관련사항, Material Balance 등 기술 적용의 적합성 검토
7. 투자비 및 투자효과 산정의 적정성
8. 경제성 판단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 가. 제조원가는 최근 1년 실적을 적용하되 필요 시 차이요인을 보정하여 적용
  - 나. 판매가는 최근가격, 전년도가격 및 3,5개년 평균가격에 대한 Case별 분석
  - 다. 주요인자에 대한 민감도 분석
9. 사업 타당성 판단: 경제성판단은 IRR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회사의 전략, 리스크 분석결과, 정성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제10조(투자심의)

- ① 제9조에 의거 사업타당성 검토를 완료한 사업 중 아래 사업은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단순 노후교체 등 다수 부서에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적거나, 위원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프로젝트성 투자 전체
  2. 투자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정비성 투자
  3.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상투자
 단, 전산 및 통신투자는 투자비 50억원 초과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심의를 실시하고,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사업은 정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투자심의를 대체한다

4. 투자자산 투자 중 제2조 1호에 준하는 사업

② 투자심의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성 및 정비성 투자

가. 1000억원 이상 전후 공정에 영향이 큰 주 생산공정 신/증설사업: 경영기획실

나. 상기 가항을 제외한 100억원 초과 사업: 선강설비투자계획실

다.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 선강설비투자계획실 또는 설비기술부

라.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사업: 설비기술부

마. 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환경설비 (법적 의무사항 준수, 오염물질의 배출량 저감 및 폐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설비, 이하 “환경단독설비”) 투자사업: 환경에너지실

2. 경상 투자(20억원 초과): 선강설비투자계획실

단, 전산 및 통신 투자 중 50억원 초과사업은 선강설비투자계획실,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사업은 정보시스템실

3. 투자자산 투자 중 제2조 제1호에 준하는 사업: 경영기획실

#### 제11조(사업승인)

① 사업승인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성 및 정비성 투자

가. 1000억원 이상 전후 공정에 영향이 큰 주 생산공정 신/증설사업: 경영기획실

나. 투자심의 대상 환경단독설비: 환경에너지실

다. 상기 가, 나항을 제외한 투자심의 대상사업: 주관부서, 단 설비기술부 투자심의 대상사업은 제안부서

라. 투자심의 제외 사업(환경단독설비 포함): 제안부서

2. 경상투자 및 투자자산투자: 제안부서

② 투자 유형별 승인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성 투자

가. 1,000억원 이상 신/증설 사업: 이사회 (경영위원회 사전심의)  
(경영위원회 사전심의)

나. 100억원 이하 사업 중 신/증설 사업을 제외한 사업: 대표이사

다. 상기 가, 나항을 제외한 사업: 경영위원회

2. 정비성 투자

가. 100억원 초과 사업: 경영위원회

나. 100억원 이하 사업: 제철소장, 담당임원

3. 경상 투자

가. 50억원 초과 사업: 경영위원회

나. 50억원 이하 사업: 제철소장, 담당임원

4. 투자자산 투자

가. 100억원 초과 사업: 이사회

나.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사업: 경영위원회

다.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사업: 대표이사

라. 5억원 이하 사업: 담당임원

③ 사업승인 후 사업승인 담당부서가 투자범위, 투자비, 건설일정, 기대효과 등 승인내용을 투자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2조(예산) 투자예산은 실행전략 및 예산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3조(계약) 발주~계약 관련업무는 계약지침에 따른다.

제14조(시공) 시공업무는 시설공사관리지침에 따른다.

#### 제15조(진행관리)

- ① 주관부서가 해당사업에 대한 종합진행관리를 한다.
- ② 사업추진 중 승인대비 사업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설비기술부 주관사업은 제안부서)가 사업을 재검토하여 최초 승인권자의 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투자비의 증액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경영위원회 이상 승인사업에 대한 투자비 증액  
가. 100 억원 이상 증액: 경영위원회 승인  
나.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증액  
- 총 투자비의 10% 이상 증액: 경영위원회  
- 총 투자비의 10% 미만 증액: 사업실행 임원  
다. 20억원 미만 증액: 사업실행 담당임원
  2. 제철소장, 담당임원 승인사업에 대한 투자비 증액: 최초 승인권자 승인

#### 제16조(성과평가)

- ① 평가종류, 평가항목(필수달성항목, 목표치, 가중치 포함), 평가시점, 중간평가 계획 등 평가기준을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투자심의 미 실시 사업은 승인권자가 정한다
- ② 중간평가는 투자성과 미달 예상사업을 조기에 도출하여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대상: 경영위 이상 승인사업
  2. 평가내용: 사업환경 변화, 설비성능, 투자비 및 공기 등 성과 달성여부와 관련된 사항
  3. 평가시기: 성과미달 예상 사유 발생시 수시, 준공 후 1개월 이내
  4. 담당부서: 주관부서
  5. 중간평가 결과 시스템 등록, 미달예상사업 발생 시 주관부서 담당임원이 성과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추진하고 최고경영층 보고
- ③ 최종 성과평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1. 성과평가는 일반평가와 활용도평가로 구분  
나. 일반평가: 활용도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에 적용  
가. 활용도평가: 경상투자과 정비성 투자 중 실제효과가 적고 효과파악이 곤란한 단순투자에 대하여 적용
  2. 평가항목  
가 일반 평가 : 투자효과, 투자비, 공기  
나 활용도 평가 : 활용도, 투자비, 공기
  3. 평가부서  
가. 일반평가: 주관부서, 단, 프로젝트성 투자는 총괄부서  
나. 활용도평가: 제안부서
  4. 평가시기

- 가. 프로젝트성 투자: 준공 후 1년 이내. 단 2년까지 연장 가능
- 나. 정비성투자, 경상투자: 준공 후 6개월 이내. 단 1년까지 연장 가능
- 다. 투자자산투자: 준공 후 2년 이내.

5. 성과평가 및 종합판정

가. 투자효과

1) 일반평가: 필수달성항목이 달성되고, 투자효과 성과평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에 투자효과가 달성  
성과평점은 평가항목별 달성율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값임.

2) 활용도평가: 투자 목적대로 활용되면 달성

나. 투자비와 공기: 최초계획달성, 변경계획달성, 미달로 구분하여 평가

다. 종합판정

1) 투자효과(또는 활용도), 투자비, 공기가 모두 달성한 경우만 투자성과가 달성된 것으로 한다.

2) 달성은 최초계획달성과 변경계획달성으로 구분하고, 미달은 효과미달, 투자비초과, 공기지연 등으로 구분한다

④주관부서는 반기에 1회 담당임원에게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 보고하고, 총괄부서는 반기에 1회 최고경영층에 보고한다. 단, 투자자산투자는 제안부서(제안부서 해체 시는 경영지원실)가 개별 투자단위로 최고경영층에 보고한다.

## 제4장 투자심의위원회

제17조(위원회 설치)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8조(위원회 기능) 투자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의한다.

1. 수급, 판매, 기술타당성, 경제성, 성과평가 기준 등에 대한 종합심의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

제19조(위원회 구성) 투자심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후공정에 영향이 큰 1,000억원 이상 주생산공정 신/증설 사업 및 투자자산 투자
  - 위원장: 경영기획담당 임원
  - 부위원장: 경영기획실장(위원겸임)
  - 위원: 선강/압연설비투자계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 기술개발실장, 설비구매실장, 정보시스템실장, 재무실장, 해당설비 운영 및 정비 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 간사: 경영기획실 투자사업그룹리더
2. 1항 및 환경단독설비 이외의 프로젝트성 투자 및 100억원 초과 정비성 투자
  - 위원장: 설비투자 담당임원
  - 부위원장: 선강설비투자계획실장(위원겸임)
  - 위원: 경영기획실장, 압연설비투자계획실장, 마케팅전략실장, 기술개발실장, 설비구매실장, 정보시스템실장, 재무실장, 해당설비 운영 및 정비 부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간 사: 선강설비투자계획실 설비투자기획팀리더

3. 환경단독설비 이외의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정비성 투자

가. 선강/압연설비투자계획실 주관사업: 2항과 동일

나. 설비기술부 주관사업

위 원 장: 제철소 설비 담당임원

부위원장: 설비기술부장(위원 겸임)

위 원: 해당설비 운영 및 정비 부장, 시스템 및 통신담당 팀리더(전산, 통신이  
관련된 사업심의 시), 설비기술부 내 투자관리담당팀리더,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간 사: 설비기술부 내 투자관리담당팀리더

4. 환경단독설비 이외의 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정비성 투자

위 원 장: 설비기술부장

부위원장: 설비기술부 투자관리담당팀리더(위원 및 간사 겸임)

위 원: 해당설비 운영 및 정비 팀리더, 설비기술부 내 설비담당팀,  
투자관리담당팀 및 공사팀 리더, 시스템 및 통신담당팀리더  
(전산, 통신이 관련된 사업 심의시),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5. 환경단독설비

위 원 장: 환경담당임원

부위원장: 환경에너지 실장(위원 겸임)

위 원: 경영기획실장, 압연설비투자계획실장, 설비구매실장, 정보시스템실장,  
재무실장, 환경에너지부장, 해당설비 운영 및 정비 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간 사: 환경에너지실 환경기획팀리더

6. 20억원 초과 경상투자

위 원 장: 설비투자 담당임원

부위원장: 선강설비투자계획실장(위원겸임)

위 원: 압연설비투자계획실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장

간 사: 선강설비투자계획실 설비투자기획팀리더

제20조(위원회 의사)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 회의개최 72시간 전에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실무자 및 안전관련 계열사 부서장을 참석시켜 설명 또는 의견을 제시토록 할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과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1983. 4.15부터 제정,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투자예규”는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3.15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7. 1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9. 2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3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7. 23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 10. 1부터 개정, 시행한다.



위 번역문은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  
합니다.

2008 년 5 월 9 일

I swear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May 9, 2008

서약인

오 중 현



signature

*[Handwritten signature]*

등부 2008 년 제 538 호

Registered No. 2008 - 538

인 증

NOTARIAL CERTIFICATE

위 오 중 현 은

**Jung Heon, Oh** Personally  
appeared before me, confirmed that  
the attached translation is true to  
the original and subscribed his (her)  
name.

본직의 면전에서 위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  
하였다.

2008 년 5 월 9 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 증 한다.

This is hereby attested on  
this 9th day of May, 2008  
at this office.



Authorized Attorney Notary Public :

공증인가

선 명 법무법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27

*[Handwritten signature]*  
**Yoon, Seong Il**

공증담당변호사

SUNMYUNG LAW FIRM

157-27 Samsung-dong Kangnam-ku  
Seoul, Korea

*[Handwritten signature]*

This office has bee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the Republic of  
Korea to as Notary Public since  
May 19, 2003 under Law No. 270